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에스엔유프리시전(이하 '당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당사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③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조치(ex 인사상 불이익)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한다.
- ④ 협의사항(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 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수 있다.

(3)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 ①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의
 -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내국신용장 개설 혹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②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종료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그 적법성을 사후 검증(모니터링)
 -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여부
 - 하자보수책임 부당전가여부
 -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 ③ 협력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④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

(4)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Ⅲ. 부칙

이 실천사항은 '18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하도급 거래 관련 개최한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 시	
장 소	

심의결과

1.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의 진행한 ##개 협력사의 발주계약 ## 건에 대하여 점검 진행하였으며, 세부 점검 내용은 '별첨 Check Sheet' 와 같음.

2.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종료 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후 심의 진행한 ##개 협력사의 발주계약 ## 건에 대하여 점검 진행하였으며, 세부 점검내용은 '별첨 Check Sheet' 와 같음.

3. 신규 등록 및 등록 취소 예정 협력사에 대한 업무기준, 절차의 적절성 심의 결과

☞ 신규등록 협력사 ## 개사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위배사항 (있음, 없음)

☞ 등록취소 협력사 ## 개사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위배사항 (있음, 없음)

4. 협력사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 이의 신청 건 심의 결과

☞ 미 선정 이의신청 ## 건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위배사항 (있음, 없음)

☞ 등록취소 이의신청 ## 건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위배사항 (있음, 없음)

※ 3, 4항 심의 Case 발생 시 별첨.

상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원회 참석자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성 여부 Check Sheet

◇ PO NO : ◇ PJT 명 : ◇ 공급품목 : ◇ Supplier :	◇ 심의일자: ◇ 참석자: 1. (서명) 2. (서명) 3. (서명)			
심의항목	심의 내용	심의결과		시정조치
		적합	부적합	
1. 서면 계약서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이 기록되어 있는가? (계약금액, 위탁일, 위탁내용, 대금지급 방법, 지급일, 검사방법, 납품장소)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공급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는가?			
	차후 수주(물량)건으로 협력사를 기만하여 계약금액을 낮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일정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는가?			
	대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 자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3. 구매강제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물품,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는가?			
4.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찬조금, 협찬금, 지원금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5. 내국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 수출 PJT에 대한 PO 건에 한해 심의 내국신용장 개설 혹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종료 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적법성 여부 Check Sheet

◇ PO NO : ◇ PJT 명 : ◇ 공급품목 : ◇ Supplier :	◇ 심의일자: ◇ 참석자: 1. (서명) 2. (서명) 3. (서명)			
심의항목	심의 내용	심의결과		시정조치
		적합	부적합	
1.대금지급 지연	선급금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하도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는가?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가?			
2.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 전가	당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보수 책임을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가?			
3. 기술유용 행위	기술자료를 요구 시 기술자료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기술자료요구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술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